

제11회 임시회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기준 개선을 통한 가정용 물의 소비절약 체계 도입으로 물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수자원 공사의 원·정수 구입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재원을 확보하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 유지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18.5% 인상 조정하고, 업종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을 현행 7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조정하여 95. 12. 1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별표 3] 업종별 구분표는 상정된(안)대로 심사 하였으나,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중 가정용 업종의 요금 인상조정율이 여타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별도 유인 배부해 드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년월일	1995. 10. . (제 회)

의 결 사 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수정 (안)

제 출 자	도시건설위원장
제출년월일	1995. 10. .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안년월일 : 1995. 10.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의결주문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수정이유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중 가정용의 요금 인상 조정율이 여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업종별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다소나마 형평을 기하고자 함.

3. 수정골자

개정조례(안)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중 가정용, 업무용, 전용 공업용의 요금을 하향 또는 상향 조정.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비 고
가 정 용	0 ~ 10 m ² (기본요금)	900	
	11 ~ 20 m ² (1 단계)	110	
	21 ~ 30 m ² (2 단계)	140	
	31 ~ 40 m ² (3 단계)	220	
	41 ~ 50 m ² (4 단계)	290	
	51 ~ 이상 (5 단계)	350	
업 무 용	0 ~ 20 m ² (기본요금)	2,800	
	21 ~ 50 m ² (1 단계)	160	
	51 ~ 100 m ² (2 단계)	210	
	101 ~ 300 m ² (3 단계)	260	
	301 ~ 이상 (4 단계)	310	
영 업 용	0 ~ 30 m ² (기본요금)	5,400	
	31 ~ 50 m ² (1 단계)	240	
	51 ~ 100 m ² (2 단계)	310	
	101 ~ 이상 (3 단계)	400	
욕 탕 1층	0 ~ 200 m ² (기본요금)	28,000	
	201 ~ 300 m ² (1 단계)	210	
	301 ~ 500 m ² (2 단계)	270	
	501 ~ 이상 (3 단계)	350	
욕 탕 2층	0 ~ 200 m ² (기본요금)	40,000	
	201 ~ 300 m ² (1 단계)	300	
	301 ~ 500 m ² (2 단계)	400	
	501 ~ 이상 (3 단계)	510	
전용공업용	계약 m ² 당 (기본요금)	95	
	초과 m ² 당 (초과요금)	150	

수 정 (안) 대 비 표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기정용	0 ~ 10㎡ (기본요금)	780	기정용	0 ~ 10㎡ (기본요금)	1,000	기정용	0 ~ 10㎡ (기본요금)	900
	11 ~ 30㎡ (1 단계)	110		11 ~ 20㎡ (1 단계)	120		11 ~ 20㎡ (1 단계)	110
	31 ~ 50㎡ (2 단계)	150		21 ~ 30㎡ (2 단계)	150		21 ~ 30㎡ (2 단계)	140
	51 ~ 이상 (3 단계)	180		31 ~ 40㎡ (3 단계)	220		31 ~ 40㎡ (3 단계)	220
				41 ~ 50㎡ (4 단계)	290		41 ~ 50㎡ (4 단계)	290
				51 ~ 이상 (5 단계)	350		51 ~ 이상 (5 단계)	350
영입 1종	0 ~ 20㎡ (기본요금)	2,760	업무용	0 ~ 20㎡ (기본요금)	2,800	업무용	0 ~ 20㎡ (기본요금)	2,800
	21 ~ 50㎡ (1 단계)	180		21 ~ 50㎡ (1 단계)	180		21 ~ 50㎡ (1 단계)	160
	51 ~ 100㎡ (2 단계)	200		51 ~ 100㎡ (2 단계)	240		51 ~ 100㎡ (2 단계)	210
	101 ~ 300㎡ (3 단계)	230		101 ~ 300㎡ (3 단계)	300		101 ~ 300㎡ (3 단계)	260
	301 ~ 이상 (4 단계)	250		301 ~ 이상 (4 단계)	360		301 ~ 이상 (4 단계)	310
영입 2종	0 ~ 30㎡ (기본요금)	5,100	영업용	0 ~ 30㎡ (기본요금)	5,400	영업용	0 ~ 30㎡ (기본요금)	5,400
	31 ~ 50㎡ (1 단계)	220		31 ~ 50㎡ (1 단계)	240		31 ~ 50㎡ (1 단계)	240
	51 ~ 100㎡ (2 단계)	260		51 ~ 100㎡ (2 단계)	310		51 ~ 100㎡ (2 단계)	310
	101 ~ 이상 (3 단계)	300		101 ~ 이상 (3 단계)	400		101 ~ 이상 (3 단계)	400
육탕 1종	0 ~ 200㎡ (기본요금)	26,000	육탕 1종	0 ~ 200㎡ (기본요금)	28,000	육탕 1종	0 ~ 200㎡ (기본요금)	28,000
	201 ~ 300㎡ (1 단계)	190		201 ~ 300㎡ (1 단계)	210		201 ~ 300㎡ (1 단계)	210
	301 ~ 500㎡ (2 단계)	210		301 ~ 500㎡ (2 단계)	270		301 ~ 500㎡ (2 단계)	270
	501 ~ 이상 (3 단계)	250		501 ~ 이상 (3 단계)	350		501 ~ 이상 (3 단계)	350
육탕 2종	0 ~ 200㎡ (기본요금)	40,000	육탕 2종	0 ~ 200㎡ (기본요금)	40,000	육탕 2종	0 ~ 200㎡ (기본요금)	40,000
	201 ~ 300㎡ (1 단계)	270		201 ~ 300㎡ (1 단계)	300		201 ~ 300㎡ (1 단계)	300
	301 ~ 500㎡ (2 단계)	330		301 ~ 500㎡ (2 단계)	400		301 ~ 500㎡ (2 단계)	400
	501 ~ 이상 (3 단계)	410		501 ~ 이상 (3 단계)	510		501 ~ 이상 (3 단계)	510
공공용	0 ~ 30㎡ (기본요금)	3,300	업무용으로 통합			업무용으로 통합		
	31 ~ 이상 (1 단계)	80						
진 용	계약 ㎡ 당	80	진 용	계약 ㎡ 당	90	진 용	계약 ㎡ 당	95
공입용	초과 ㎡ 당	130	공입용	초과 ㎡ 당	140	공입용	초과 ㎡ 당	150

업 종 별 구 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업 종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업 종	구 분 내 역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칠물 등의 소매점, 10㎡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교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가정용	----- ----- ----- ----- ----- ----- ----- ----- 원호단체	가정용	개정(안)과 같음
영업용 1종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시설 소화전.	업무용	----- ----- ----- ----- ----- ----- -----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 금고, 농협수협, 축협,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대한적십자사	업무용	개정(안)과 같음
영업용 2종	(생략)	영업용	(현행과 같음)	영업용	개정(안)과 같음
유통용 1종	(생략)	유통용 1종	(현행과 같음)	유통용 1종	개정(안)과 같음
유통용 2종	(생략)	유통용 2종	(현행과 같음)	유통용 2종	개정(안)과 같음
공공용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 금고, 농협수협, 축협,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대한적십자사	삭 제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전 용 공업용	(생략)	전 용 공업용	(현행과 같음)	전 용 공업용	개정(안)과 같음